

- 또한, 사업시행자의 분양·임대용 산업용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유사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5년 설정
- (7)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·운영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·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
- (8)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국세는 既 감면 종료('18년)하였고, 조세감면이 전체 외국인투자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 고려 감면 종료
- 다만, 종전 규정에 따라 '25년 말까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 적용 가능

※ '18년 국세 감면 종료 시 '18년 말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적용하였으나, 이는 법 규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「지특법」은 '25년 말까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종전 감면 적용 가능

< 관련 규정 참고 >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의3(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 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(이하 이 조에서 "외국인투자"라 한다)에 대해서 <u>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</u>(이하 이 조에서 "조세감면신청"이라 한다)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<u>감면결정</u>(이하 이 조에서 "조세감면결정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(이하 생략) ◎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(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) ② <u>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</u>에 대해서는 (이하 생략) |
|--|

- (9)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현행 감면 3년 연장
- (10) '미집행' 종기 및 감면범위에서 실무 운영과 법원 판결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